

공중방역수익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의원)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병역법」 제34조의7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로서 가축방역업무에 3년간 복무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임.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일선 시·도에 배치되어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관으로도 임명되는 등 국가가축방역체계를 이루는 가축방역인력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는 매년 150명을 정원으로 하여 선발되고 있는데, 최근 정원 미달 문제가 나타나고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 가축방

역업무에 차질이나 지연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현행 「병역법」 체계 하에서 의사(또는 수의과대학 재학생)는 일반적으로 ① 현역 수의장교, ② 공중방역수의사, ③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세 가지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병역의무자가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더 긴 현역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를 선택할 유인이 감소하였음.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하여 발표된 연구자료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개선 필요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바, 응답자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제일 중요한 제도개선 필요항목으로 인식하였는데, 연구진은 그 이유를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과 달리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유인 감소는 특히 의사관후보생의 역종분류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의사관후보생은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 후, 수년이 지나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역종을 현역(수의장교) 또는 보충역(공중방역수의사)으로 분류하는 제도임.

의사관후보생 중 수의장교로 분류되지 않은 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우선선발되므로, 의사관후보생은 곧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후보군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수의사관후보생 역종분류 현황 】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의사관후보생 中 역종분류 대상자	167	152	150	131	37
수의장교 분류	38	26	37	41	26 ¹⁾
공중방역수의사 분류	129	126	113	90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역종분류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가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공중방역수의사로 우선선발될 수 있는 자격인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거나 편입 이후 병적을 유지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은 이러한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 감소와 이로 인한 정원 미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공중보건수의사 제도를 규정하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의 경우 최근(2024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정안과 같은 수급관리 및

1) 실제 수의장교로 분류된 인원은 27명이나, 1명이 입영연기하여 26명이 최종 선발됨

실태조사 제도를 이미 마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안 제4조의2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 수급관리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전망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안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된 대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하려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에 대한 전망도 필요하므로 전망의 대상을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나.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현황조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 제도로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 의사 제도가 있는데,

공중보건 의사 제도를 규정하는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 의사의 특수지급무수당 미지급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수등 현황조사를 규정하여, 공중보건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대응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미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 ① 연도별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기관의 보수지급실태 등을 평가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의료법」과 같이 필수적으로 배치를 감축하는 등의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보수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배치의 취소 또는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배치기관으로부터 보수등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의 문언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단순히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지급주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행법 제16조는, 「농어촌의료법」에서 공중보건수의사의 보수

등을 누가 지급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중
방역수의사의 보수등을 누가 지급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관한 현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